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이상조 · 김진건

(부경대학교)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의 총어획량은 1970년 72만톤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약 137만톤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최근까지의 어획량 생산동향은 연근해어업의 경우 1986년의 약 173만톤을 제외하고는 1996년까지 130~150만톤 수준으로 답보 상태에 있으며, 일부 어업자원의 감소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국립수산진흥원, 1997).

이는 연근해어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접국과의 어업경쟁이 심화되고, 대단위 간척, 매립사업에 의한 연안 어장의 축소 및 산란장, 서식장의 파괴, 그리고 각종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 등에 의한 어장환경의 악화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어업인에 의한 불법어업과 치자어 남획에 의한 영향도 적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해양수산부, 1997).

불법어업은 어업자원을 남획하고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으며, 인접국과의 외교상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허가 소형저인망어선은 불법어업의 주범으로서 내만, 수로, 도서 주변 등 수심이 얇은 해안가까이에서부터 수심이 깊은 상당히 먼 어장까지 진출하여 고가의 저서어를 아주 작은 치자어까지 마구잡고 있다(김, 1989).

따라서 정부는 최근에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불법어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어민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해양수산부, 1997).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이, 1996)가 있으나, 연근해어선어업에 대한 불법어업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한 것은 보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의한 연근해어선어업의 단속실적을 토대로 하여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어장, 어법의 종류, 범칙 사항 등을 분석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1995, 1996, 199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1995), 수산연감(1995, 1996) 등의 자료와 수산관계 법령을 기초로 하여 연근해 불법어선의 지도 단속에 관한 규정과 체제 및 절차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7~19척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한국 연근해 어장에서 불법어선어업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각 선별 불법어업자 처리상황대장을 자료로 그 기재 항목에 따라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해역, 업종,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II.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

1. 연근해 불법어선어업의 지도 단속 규정

불법어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과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을 뜻한다. 따라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과 면허, 허가 취소 및 과징금¹⁾과 과태료금 부과²⁾, 특히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어업에 대한 어획물과 어선, 어구를 몰수³⁾하도록 하는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의법 단속 조치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연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하는 “근해어업”(수산업 41조 제1항)과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연안어업”(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면허·허가하는 “구획어업”(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하는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시험어업”(수산업법 제42조)이 있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선어업의 종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근해어업(법제25조), 연안어업(법제27조), 구획어업(법제29조),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법제31조) 등에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근해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면허·허가의 우선순위, 기타 면허·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산업법 제12조, 제13조 및

1) 해양수산부(1997) : 수산관련법령 해설서, 해양수산부 연근해과, pp. 63~66.

2) 해양수산부(1997) : 수산관련법령 해설서, 해양수산부 연근해과, pp. 67~69.

3) 해양수산부(1997) : 수산관련법령 해설서, 해양수산부 연근해과, pp. 71.

제41조 제4호).

또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령제4조), 특정어구의 사용금지(령제5조), 어망목의 제한(령제6조), 어구의 규모제한(령제6조의 2),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및 소지의 금지(령제6조의 3), 어구 사용 금지구역과 기간(령제7조), 포획 금지구역과 기간(령제8조), 포획·채취 금지기간(령제9조), 포획·채취 금지체장(령제10조),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암컷 포획 금지(령제11조), 어란채취 및 치어 포획의 제한(령제12조의2), 어도 차단금지 및 소하어류 통로상의 제한(령제12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령제14조), 수산동식물의 이식(령제15조의 2),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령제16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령제17조), 포획·채취물의 제한(령제18조), 어획물의 양륙제한(령제19조), 어획물을 옮겨 신는 것의 제한(령제20조),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령제23조), 어업권 보호구역 내의 행위제한(령제26조), 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령제27조), 포장 및 용기의 제한(령제28조), 범칙포획·채취물의 판매 등의 금지(령제29조) 등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행위의 판단기준은 출입항신고(규칙제13조), 어선출어등록(규칙제14조), 어선단조업(규칙제15조), 출입항의 제한(규칙제16조), 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칙제17조), 월선의 금지 등(규칙제18조), 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규칙제19조), 어업무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 등(규칙제21조), 식별신호의 이해(규칙제22조), 경보청취의무(규칙제24조), 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규칙제25조), 해상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규칙제27조) 등이다(이, 1966).

따라서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수산업법 제57조). 그러나 어업인들이 이러한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엄격한 벌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91조의 2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동법 제94조에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동법 제98조에서 벌금형 중 죄질이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99조에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에 대한 어획물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몰수”와 이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체제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에서는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군 수산관계 기관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 및 군, 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해양경찰청, 경찰청, 검찰이 각각 고유의 대상과 조직에 의해 독자적 또는 합동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정은 영해와 그 외측 및 인접국 수역을 담당하고, 시·도·군 어업지도선은 영해 기선 내측의 관할수역을 분담하여 책임단속하며, 시·도·군 경계수역은 관련 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및 시·도·군이 경찰청과 공조하여 우범해역에서 검찰의 지휘하에 단속을 실시한 때도 있다. 어로한계선과 조업자제선 및 월선조업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해군함정 및 해양경비정이 합동 단속을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 및 군, 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 면세유티 및 수산기자재 공급 중지, 영업자금 회수 및 대출중지 등 신분상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⁵⁾

한편, 경찰청은 불법어구 전문제작자 단속 및 불법어업자 친목단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한편, 수협 위판장과 인근 선착장 및 유통시장을 통한 범칙어획물 거래를 단속한다.

3. 불법어업 단속 절차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절차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시·도·군 어업지도선의 지도 단속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수립 단계로부터 결과처리까지의 과정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⁶⁾

(1) 어업지도 단속의 계획수립 : 시·군에서는 자체지도 단속계획, 시·도에서는 시·도 단위 합동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도, 수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한다.

(2) 어업지도선의 출동 : 선박의 설비와 지도 단속을 위한 제반 장비를 정비 점검하며, 유류, 식수 등 선용품을 적재하고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여 현지로 출동한다.

(3) 불법어선 검거 : 혐의 어선이 발견되면 전속력으로 추적하며, 가까이에 가면 소형 단속용 패속보트를 수면에 내리고, 정선명령하면서 추적하여 검거한다.

(4) 심문조사 : 불법어선의 경영자, 선장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선박관계서류의 열람, 어구, 어획물을 조사하며, 불법어업이 확인되었을 때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선장의 확인서를 받으며, 그 증거물로서 어구, 어획물 등을 압수한다. 이 사실을 선내에 비치하고 있는 “불법어업자 처리상황대장”에 기재한다.

4) 이태희(1996) :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pp. 18~19.

5) 해양수산부(1997) :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pp. 79.

6) 이태희(1996) :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pp. 19~20.

(5) 피의자 조치 : 위법 사실이 사법처리대상일 때는 피의자를 관할 지방 검찰청에 송치하며, 행정처분 대상일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위법사실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6) 경제적 제재 : 해당 수협에서는 불법어업자의 명단이 통보되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그 명단을 공시하며, 그 정도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명한다. 그리고 영어자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중지하며, 면세유류 및 선용품 등의 공급을 중지한다.

(7)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규칙 제3조에서 신고어업·허가어업(원양어업제외)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규칙 제4조에서는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⁷⁾

4.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개황

1960년대의 불법어업은 허가어선으로서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20톤 미만의 소형허가어선에 의한 연안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소형 무허가어선이 증가하면서 고가어종이 감소하여 어획이 부진하자 양식장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양식물을 절취하는 행위까지 자행하는 등 어업질서가 극히 문란하게 되었으나, 단속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법어업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어선들은 점차 대형화, 고속화, 조직화하고 있으나 일선 시·도의 단속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어업자들이 어업지도선에 방화를 하거나, 단속공무원을 납치 또는 폭행하거나, 집단 시위를 한다든가 가족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계 공무원의 사기마저 저하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⁸⁾

1994년 3월 15일 대마도 근해에서 어업지도선의 단속을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이를 추적하는 단속 보트를 고의로 충돌하여 전복시키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동년 3월 24일 부산 다대항에서 어업지도선을 집단행동으로 포위하고 난입하여 지도 단속 근거를 없애기 위해 카메라를 절취하고 단속기록대장을 탈취하여 바다에 투기해 버린 사건이 있었으며, 동년 5월 11일에는 부산항 부근의 오류도 근해에서 부산시 어업지도선의 지도 단속공무원을 5시간동안 감금하고 대치한 사건, 동년 10월 11일 백령도 서방 25마일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에 해군함정의 남하조치에 불응하고 고의로 함정에 돌격하여 함체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 1995년 3월 22일 추자도 남방 장수도 근해에서 어업지도선의 추적을 받으면서 접근하는 단속 보트를 식칼로 위협한 사건,

7) 수산청(1996)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pp. 2~4.

8) 이태희(1996) :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pp. 26~27.

동년 3월 27일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중 공무원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선원의 칼에 찔려 순직한 사건, 동년 8월 21일 군산항 부근의 연도 근해에서 멸치권현망어선 198척이 집단으로 조업구역 확대를 위한 해상시위를 강행하면서 어업지도선을 강제 납치하여 방화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29시간동안 감금, 폭행한 사건 등은 결코 다시 있어서는 안될 불미로운 사례인 것이다.

(1) 업종별 불법어업 단속 실적

1970년부터 1996까지 27년간의 업종별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은 <표 2-1>과 같으며, 연평균 2,846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연평균 1,294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45.8%로 가장 많으며, 기선형망어업은 연평균 292건으로 9.6%, 유자망어업은 연평균 152건으로 5.4%,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연평균 57건으로 2.0%, 대형기선저인망은 연평균 41건으로 1.4%를 차지하였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건수의 연도별 경향을 보면 첫 번째로 불법어업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에서 연간 1,500건 내외의 많은 건수가 단속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2년까지에서 연간 1,200건 내외의 건수로 다소 감소한 경향이었으나, 1993년부터 계속 1996년까지에서 연간 1,500건 이상의 많은 건수가 단속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불법 지도 단속건수는 1970년부터 1996년까지에서 약 7~8년 주기로 증·감의 경향이 있으며 이대로의 경향이라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에서도 연간 1,500건 이상의 많은 건수가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불법어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기선형망어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에서 연간 400건 내외의 많은 건수가 단속되었으나, 1985년부터 연간 250건 내외로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 연간 110건의 적은 건수가 단속되었다. 이것은 서해중부연안에서 무허가어업으로 행해진 것 중의 일부를 허가 조치한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연간 200건 이상이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불법어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유자망어업도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에서는 연간 200건 내외의 건수로 단속되었던 것이 1985년에 연간 91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후 다시 점점 증가하여 1996년에 연간 170건이 단속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경향으로 보인다.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표 2-1> 업종별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

(단위: 건수)

연도별	대형기저	중형기저	소형기저	기선형망	유자망	기 타	계
1970	68	23	765	-	153	770	1,779
1971	53	39	629	-	136	487	1,344
1972	46	17	1,052	502	139	780	2,536
1973	67	57	721	379	111	722	2,057
1974	25	19	1,099	427	137	781	2,488
1975	44	21	1,176	489	164	894	2,788
1976	36	18	1,496	395	175	980	3,100
1977	30	32	1,285	308	283	879	2,817
1978	19	9	1,110	205	98	870	2,311
1979	33	11	1,476	412	161	768	2,861
1980	23	20	1,446	343	207	725	2,764
1981	21	7	1,413	354	200	928	2,923
1982	19	25	1,688	441	207	784	3,164
1983	16	37	1,766	336	201	1,054	3,410
1984	28	27	1,539	451	191	797	3,033
1985	40	40	1,186	226	91	984	2,567
1986	27	42	1,549	276	120	971	2,985
1987	23	46	1,122	297	92	819	2,399
1988	39	81	1,193	234	109	1,158	2,814
1989	36	76	1,577	218	109	1,208	3,224
1990	27	74	1,216	110	138	1,297	2,862
1991	31	74	1,073	124	92	1,227	2,621
1992	41	129	1,129	152	121	1,316	2,888
1993	52	197	1,568	132	149	1,699	3,797
1994	83	148	1,608	168	172	1,825	4,004
1995	78	162	1,595	172	175	1,413	3,595
1996	92	105	1,466	154	170	1,141	3,128
연평균	41	57	1,294	270	152	1,010	2,824
비율(%)	1.4	2.0	45.8	9.6	5.4	35.8	100

기타 불법어업이 그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형기선저인망어업과 대형기선저인망어업도 그 단속건수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그 방지 대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지역 및 기관별 불법어업 단속 실적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년간의 지역 및 기관별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은 <표 2-2>와 같다. 이것에서 1992년까지의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약 3,000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1993년 약 3,800건, 1994년 약 4,00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의해 단속된 불법어업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UN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업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 불법어업의 조기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시, 도,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과 육상 및 공중을 연계하여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의지와 지도 계몽 등으로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95년 3,595건, 1996년 3,128건 등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⁹⁾

<표 2-2> 지역 및 기관별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단위: 건수)

지역 년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청	해양 수산부	합계
1985	63	37	20	84	146	119	690	154	797	113	24	320	2,567
1986	151	35	28	87	190	137	933	224	778	130	3	299	2,995
1987	63	14	66	49	176	120	651	230	567	92	93	278	2,399
1988	137	14	45	55	250	179	551	268	764	124	164	263	2,814
1989	125	18	72	88	163	188	666	224	1,009	99	206	366	3,224
1990	118	23	76	106	212	108	635	209	711	75	277	312	2,862
1991	72	12	60	106	186	64	745	174	561	123	204	313	2,620
1992	102	4	61	54	230	104	845	188	359	95	406	261	2,709
1993	205	20	57	48	211	245	875	250	745	134	610	397	3,797
1994	217	22	163	51	267	162	1,096	160	733	91	431	611	4,004
1995	170	65	31	56	339	111	704	158	456	104	406	995	3,595
1996	203	22	21	49	252	83	719	89	400	119	234	937	3,128
연평균	135	24	58	69	218	135	759	194	657	108	255	446	3,059
비율(%)	4.4	0.8	1.9	2.3	7.1	4.4	24.8	6.3	21.5	3.5	8.3	14.6	100

9) 해양수산부(1997) :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pp. 78~79.

III.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적 분석

1.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한 출동 실적

최근 3개년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을 위한 출동실적은 <표 3-1>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

<표 3-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한 출동 실적

선박별	1994년			1995년			1996년		
	출동 회수	일수	단속 건수	출동 회수	일수	단속 건수	출동 회수	일수	단속 건수
A	12	143	8	17	187	15	14	173	11
B	13	141	20	16	202	20	16	175	11
C	15	139	28	19	172	44	19	183	45
D	17	171	41	21	187	100	18	169	56
E	20	186	50	18	166	43	18	164	37
F	3	33	15	17	149	73	19	161	68
G	9	85	49	19	162	50	19	171	56
H	-	-	-	18	162	57	18	163	65
I	18	155	84	14	110	70	23	191	125
J	23	159	43	21	168	86	22	173	90
K	26	181	90	22	172	116	21	175	136
L	19	164	30	23	193	117	20	166	90
M	21	195	42	18	161	76	17	153	54
N	23	198	35	21	197	52	16	145	22
O	13	167	1	17	182	13	16	175	7
P	26	206	47	21	179	33	17	167	22
Q	18	203	14	16	165	16	16	184	10
R	16	200	14	15	146	14	15	179	19
S	-	-	-	-	-	-	6	59	13
계	292	2,726	611	333	3,060	995	330	3,126	937
척당평균	17.2	160.4	35.9	18.5	170.0	55.3	17.4	164.5	49.3

1994년에는 17척의 어업지도선이 총 292회, 2726일간 출동하여 611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다. 이것을 1척당 평균하면 출동회수 약 17회, 출동일수 약 160일, 단속건수 약 36건이었다.

1995년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1994년도의 것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18척이 총 333회, 3,060일간 출동하여 995건을 단속하였다. 이것을 1척당 평균하면 출동회수 약 19회, 출동일수

170일, 단속건수 약 55건이었다.

1996년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1995년도의 것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19척이 총 330회, 3,126일간 출동하여 937건을 단속하였다. 이것을 1척당 평균하면 출동회수 약 17회, 출동일수 약 165일, 단속건수 약 49건이었다.

1994년의 출동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 척의 지도선이 수리, 정비로 인하여 취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특히 F선과 G선은 10월부터 취항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1척당 평균 출동회수는 약 19회, 출동일수는 약 174일, 단속건수는 약 37건이 된다.

1995년에도 I선이 장기수리한 것을 제외하면 1척당 평균 출동 회수는 약 19회, 출동일수는 약 174일, 단속건수는 약 54건이 된다.

1996년에도 S선이 10월부터 취항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1척당 평균 출동회수는 18회, 출동일수는 170일, 단속건수는 51건이 된다.

이상으로 보아 1척당 연간 평균 출동회수는 18~19회, 출동일수는 170~17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1994년에는 17척의 어업지도선 중에서 2~5척이 정상출동하지 못하였고, 1995년에는 18척의 어업지도선 중에서 1~2척이 정상출동하지 못하였으며, 1996년에는 19척의 어업지도선 중에서 1~2척이 정상출동하지 못하였다.

2. 어업시기별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표 3-2> 어업시기별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

월별	1994		1995		1996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1	50	6.1	53	4.9	66	7.1
2	5	6.2	60	5.5	80	8.6
3	60	7.3	87	8.0	58	6.2
4	82	9.9	105	9.7	135	14.5
5	73	8.8	124	11.4	94	10.1
6	107	13.0	126	11.6	64	6.9
7	104	12.6	100	9.2	77	8.3
8	73	8.8	88	8.1	60	6.4
9	91	11.0	72	6.6	51	5.4
10	58	7.0	66	6.1	89	9.5
11	42	5.1	120	11.0	62	6.6
12	35	4.2	85	7.8	97	10.4
계	826	100	1,086	100	933	100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최근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주로 연근해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하여 어업 시기별로 불법어업을 단속한 실적은 <표 3-2>와 같다.

1994년에는 4~9월의 6개월간에 연간 불법어업 총 단속건수의 약 64%를 차지하였고, 1995년에는 3~8월의 6개월간에 약 58%, 11월에 약 11%를 차지하였으며, 1996년에는 3~8월의 6개월간에 약 52%, 10월과 12월에 약 10%씩을 각각 차지하였다.

이것에서 1994년에는 어업시기별 불법어업의 단속건수가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되었으나 1995년, 1996년으로 갈수록 분산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불법어업도 일정한 계절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주년 어느 때에도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4년~1996년의 3개년간에 단속한 불법어업의 건수를 종합해 보면 각 연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연근해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어업시기인 4~9월의 6개월간에 약 57%가 단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불법어업의 주된 업종은 소형기선저인망인데, 이 시기가 기상이 좋으므로 소형어선이라 할지라도 조업이 용이하고, 또한 우리 나라 국민들이 1년 중 봄철부터 여름철까지에서 생선회를 가장 즐겨 먹는 시기이므로 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무허가 어선까지 출어하여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역별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한국 연근해어장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을 단속한 해역별 단속실적은 <표 3-3>과 <그림 3-1, 3-2, 3-3>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해역 구분은 불법어업이 많이 행해지는 해역을 중심으로 하여 남해에서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과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 및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으로 나누고, 서해에서는 군산항 근해의 서해 중부해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해역별 해구, 즉 남해 동부해역에는 해구번호 92, 93, 94, 95, 96, 100, 101, 102, 103, 107, 108, 368 등의 해구를 포함시키고, 남해 중부해역에는 해구번호 98, 99, 105, 106, 111, 112, 114 등의 해구를 포함시켰으며, 남해 서부해역에는 해구번호 97, 211, 212, 213, 214, 224, 110 등의 해구를 포함시켰다. 또 서해 중부해역에는 해구번호 172, 173, 174, 182, 183, 193 등의 해구를 포함시켜 해역별 불법어업 단속건수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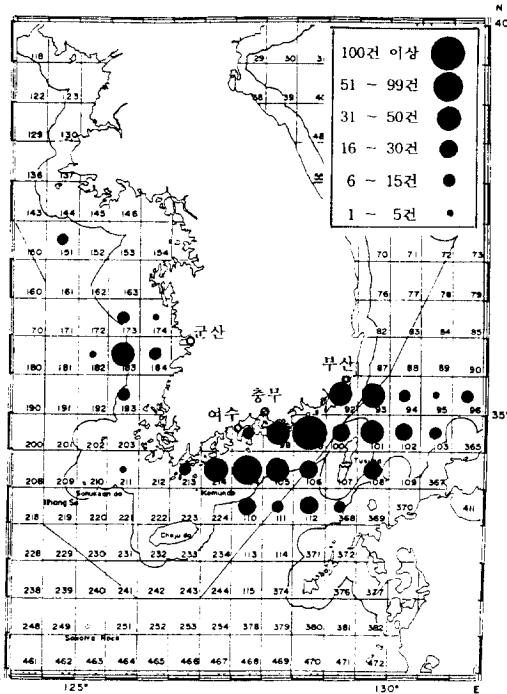
1994년에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에서 101해구 43건, 93해구 32건, 92해구 31건, 102해구 25건, 100해구 21건, 108해구 21건, 94해구 13건 등 모두 186건이 단속되어 전체 단속건수의 약 23%를 차지하였고,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에서는 99해구 167건, 105해구 43건, 98해구 35건, 106해구 29건, 112해구 20건 등 모두 294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36%를 차지하였으며,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구에서는 104해구 69건, 214해구 40건, 110해구 23건, 213해구 15건 등 모두 147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18%를 차지하고, 군산항부근의 서해 중부해

구에서는 183해구 33건, 193해구 13건, 173해구 11건, 184해구 6건 174해구 4건 등 모두 67건의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8%를 차지하였다.

<표 3-3> 해역별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적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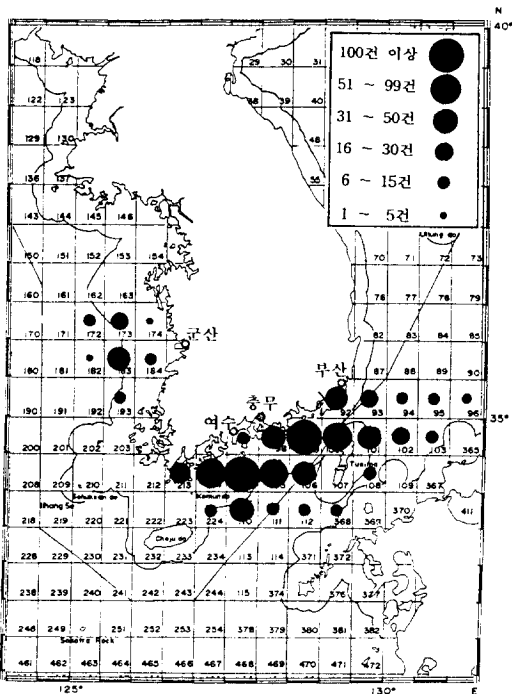
해구명	1994	1995	1996	해구명	1994	1995	1996
76	-	1	-	172	1	7	-
82	1	1	1	173	11	17	1
87	15	6	4	174	4	3	1
89	1	-	-	182	2	4	-
90	4	4	5	183	33	32	2
91	5	9	10	184	6	13	-
92	31	42	24	193	13	9	13
93	32	23	26	201	-	-	1
94	13	9	7	202	2	4	4
95	4	15	5	203	2	13	-
96	10	6	2	210	-	-	4
97	9	10	6	211	4	8	6
98	35	40	49	212	-	3	4
99	167	220	201	213	15	17	15
100	21	55	32	214	40	73	89
101	43	43	25	221	1	-	-
102	25	24	9	223	-	-	4
103	6	6	3	224	2	15	9
104	69	153	89	268	3	-	-
105	43	77	156	351	2	-	-
106	29	35	58	352	1	-	-
108	21	10	6	358	2	-	3
109	-	-	1	361	1	-	-
110	23	34	22	362	1	1	1
111	6	6	5	366	3	-	-
112	20	14	8	367	2	1	-
113	-	1	1	368	15	9	5
114	10	6	4	371	2	2	1
115	-	1	1	374	-	-	1
128	-	-	1	469	-	-	3
140	-	-	1	470	-	2	-
142	2	-	-	499	-	-	1
144	3	2	1	562	-	-	1
151	10	-	-	964	-	-	1
				합 계	826	1,086	933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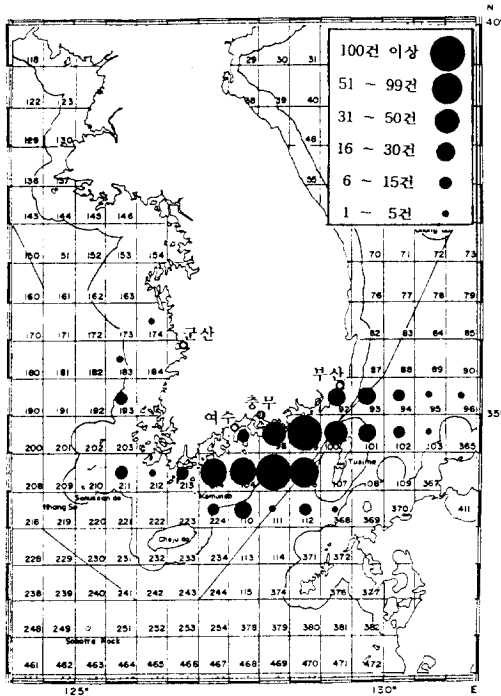
<그림 3-1> 1994년 해역별 해구별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1995년에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에서는 100해구 55건, 101해구 43건, 92해구 42건, 102해구 24건, 93해구 23건, 94해구 9건 등 모두 196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18%를 차지하였고,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에서는 99해구 220건, 105해구 77건, 98해구 98건, 106해구 35건, 112해구 14건 등 모두 386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36%를 차지하였으며,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에서는 104해구 153건, 214해구 73건, 110해구 34건, 213해구 17건, 224해구 15건 등 모두 292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27%를 차지하였고, 군산항 근해의 서해 중부해역에서는 183해구 32건, 173해구 17건, 184해구 13건, 193해구 9건, 172해구 7건 등 모두 78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7%를 차지하였다.



<그림 3-2> 1996년 해역별 해구별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1996년에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에서 100해구 32건, 93해구 26건, 101해구 25건, 92해구 24건, 102해구 9건, 94해구 7건 등 모두 123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13%를 차지하였고,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에서는 99해구 201건, 105해구 156건, 106해구 58건, 98해구 49건, 112해구 8건 등 모두 472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를 차지하였으며,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에서는 104해구 89건, 214해구 89건, 110해구 22건, 213해구 15건, 224해구 9건 등 모두 224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24%를 차지하였고, 군산항 근해의 서해 중부해역에서는 193해구의 13건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해구에서는 불과 1~2건을 단속하는데 그쳐 전체 단속건수의 약 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림 3-3> 1996년 해역별 해구별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이것에서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에서는 불법어업의 단속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일정 건수가 단속되고 있고,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과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에서는 1994년보다 1995년에 더 증가되고, 1996년에는 1995년에서보다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산항 근해의 서해 중부해역에서는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8%, 1995년에 약 7%였으나 1996년에 불과 2%로 크게 감소되었다.

4. 업종별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을 단속한 업종별 지도 단속실적은 <표 3-4>와 같다.

1994년에는 무허가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668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 826건의 약 81%를 차지하였고,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이 55건으로 약 7%, 근해트롤어업 29건으로 약 4%,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이 17건으로 약 2%, 연안조망어업이 16건으로 약 2%를 차지하는 등 5종의 어업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95%를 차지하였다.

1995년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887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 1,086건의 약 82%를 차지하였고,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이 72건으로 약 7%, 연안조망어업이 35건으로 약 3%, 근해트롤어업이 20건으로 약 2%, 형망어업이 19건으로 약 2%를 차지하는 등 5종의 어업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95%를 차지하였다.

1996년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844건으로서 전체 단속건수 933건의 약 91%를 차지하였고,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이 37건으로 약 4%, 근해트롤어업이 15건으로 약 2%를 차지하는 등 3종의 어업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97%를 차지하였다.

이상에서 무허가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단속건수 비율은 1994년 약 81%, 1995년 약 82%, 1996년 약 91%로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허가 불법어업인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각각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약 7%, 7%, 4%로 점점 감소하였고,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연안조망어업 등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4> 업종별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

어업별	1994		1995		1996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소형기저	668	80.9	887	81.7	844	90.5
중형기저	55	6.7	72	6.6	38	4.1
대형기저	17	2.1	10	0.9	6	0.6
근해트롤	29	3.5	20	1.8	15	1.6
연안조망	16	1.9	35	3.2	5	0.5
형 망	4	0.5	19	1.7	2	0.2
기선권현망	10	1.2	-	-	1	0.1
연근해연승	3	0.4	7	0.6	7	0.8
연근해통발	9	1.1	4	0.4	3	0.3
잠 수 기	2	0.2	9	0.8	1	0.1
기 타	13	1.6	23	2.1	11	1.2
계	826	100	1,086	100	933	100

5. 경영자 주소지별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지도 단속한 불법어업 경영자의 주소지별 단속실적은 <표 3-5>에 서와 같다.

이것에서 부산에 주소지를 둔 불법어업자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를 차지하던 것이 1995년에 약 41%, 1996년에 약 33%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단속된 것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불법어업자로서 1994년에 약 16%, 1995년에 약 20%, 1996년에 약 35%로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 주소지를 둔 불법어업자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어선을 타지역 어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매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지며, 불법어업이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지지 않는다. 또 1996년 경남에 주소지를 둔 불법어업자가 급증한 것은 1994년까지 경남 관할 검찰의 불법어업자에 대한 구속 검거 위주의 강력한 단속 때문에 경남 인근 해역에서의 단속활동이 다소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세 번째로 많이 단속된 것은 전남에 주소지를 둔 불법어업자로서 1994년에 약 24%, 1995년에 약 29%, 1996년에 약 29%로서 감소되지 않고 일정비율로 지속되고 있다.

네 번째는 전북으로서 1994년에 약 4%, 1995년에 약 6%, 1996년에 약 1%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타 경북, 충남, 인천 등에서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표 3-5> 경영자 주소지별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

주소지	1994		1995		1996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경 기	-	-	-	-	2	0.2
경 남	134	16.2	221	20.3	329	35.3
경 북	15	1.8	3	0.3	5	0.5
전 남	201	24.3	313	28.8	266	28.5
전 북	36	4.4	64	5.9	13	1.4
제 주	2	0.2	1	0.1	1	0.1
충 남	8	1.0	25	2.3	2	0.2
부 산	419	50.7	441	40.6	305	32.7
서 울	-	-	2	0.2	-	-
인 천	11	1.3	2	0.2	1	0.1
기 타	-	-	14	1.3	9	1.0
계	826	100	1,086	100	933	100

6. 범칙 사항별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단속한 불법어업의 범칙 사항별 단속실적은 <표 3-6>에서와 같다.

이것에서는 수산업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이 첫 번째로 가장 많았으며,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64%를 차지하였고, 1995년에 약 58%, 1996년에 약 56%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이며,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21%, 1995년에 약 26%, 1996년에 약 36%를 차지하였으며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는 수산업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허가어업으로서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를 차지하였고, 1995년에 약 10%, 1996년에 약 2%를 차지하였으며,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는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에서 규정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로서 1994년에 약 3%를 차지하였고, 1995년에 약 0.4%, 1996년에 약 0.6%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은 매우 낮았다.

<표 3-6> 범칙사항별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

범칙사항	1994		1995		1996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단속건수	비율 (%)
어선·어구 허가 위반	43	5.2	110	10.1	16	1.7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530	64.2	628	57.8	520	55.7
특정 어업의 금지구역 위반	22	2.7	4	0.4	6	0.6
어구 사용 금지 구역과 기간 위반	1	0.1	4	0.4	9	1.0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 위반	10	1.2	9	0.8	5	0.5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위반	173	20.9	285	26.2	338	36.2
기 타	47	5.7	46	4.2	39	4.2
계	826	100	1,086	100	933	100

7. 불법어업의 근절 대책

1997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¹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업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 새로운 어업질서확립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정부적 차원에서 불법어업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불법어업의 조기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부처와 시, 도, 수협 등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를 구축, 육상과 해상 및 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펴고, <표 3-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시·도 지역별 무허가, 무신고 불법어선 척수가 많은 지역, 특히 소형기선지인망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부산 다대포, 전북 군산, 전남 여수, 경북 구룡포,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 도가 지역실정에 알맞는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0) 해양수산부(1997) :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pp. 201~202.

<표 3-7> 시·도 지역별 무허가·무신고 불법어선 척수의 추정 현황

지역 \ 어업별	소형기저	중형기저	기선형망	잠수기	통발	삼중망	유자망	기타	계
부 산	525	89	57	-	15	-	-	35	721
인 천	-	-	-	-	-	30	-	10	40
경 기	-	-	2	-	33	-	8	59	102
강 원	-	-	31	-	41	-	-	-	72
충 남	21	-	-	17	69	19	14	74	214
전 북	37	18	-	5	-	-	-	97	157
전 남	1,224	3	35	-	9	11	11	448	1,741
경 북	-	19	22	7	-	-	-	54	102
경 남	393	69	22	7	7	25	-	57	580
제 주	-	-	-	-	-	-	-	-	-
계	2,200	198	169	36	174	85	33	834	3,729

※ 96. 12월말 현재, 해양수산부 추정(단위: 척수)

또한 상습, 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조정,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유지형 불법어선 1,000척을 척당 1~3천만원을 용자지원, 합법어업으로 전업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에 불법어업대책본부 및 고발센타를 설치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내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불법어업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10회에 걸쳐 전국 일제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범칙어획물 위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제명,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 회수 및 대출중지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신분상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의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간 부정어업의 지도 단속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 불법어업이 성행한 시기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간의 불법어업 단속건수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연근해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어업 시기인 4~9월의 6개월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기는 해상기상이 좋으므로 소형선이라도 조업이 용이하고 또한 국민들이 생선회를 즐겨 먹는 시기라는 것에 주목하여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불법어업이 성행한 해역은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에서는 불법어업의 단속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일정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어업도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고,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과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에서는 그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어업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군산항 근해의 서해 중부해역에서는 그 단속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 해구에서는 불법어업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남해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체계를 각 해역별, 해구별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어업의 업종은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80~90%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아울러 어업자원이 감소해지고 있는 저서어를 대상으로 아주 작은 어종까지 무차별하게 어획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근절시켜야할 업종인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는 해상 단속과 어구제작 업소를 파악 감시하는 방안과 어획물의 유통경로를 추적 감시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법어업의 경영자 주소지별 단속건수에서는 부산에 주소지를 둔 불법어업자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중이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이던 것이 1995년에 약 41%, 1996년에 약 33%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고, 다음이 전남인데 1994년에 약 24%,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약 29%로서 감소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지속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남인데 1994년에 약 16%이던 것이 1995년에 약 20%, 1996년에 약 35%로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불법어업의 경영자수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불법어업이 성행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적규정과 그 체제 및 절차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한 불법어업자 처리상황대장을 토대로 하여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어장, 어업의 종류,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1994년에는 17척이 총 292회, 2,726일간 출동하여 총 826건을 단속하였으며, 1995년에는 18척이 총 333회, 3,060일간 출동하여 총 1,086건을 단속하고, 1996년에는 19척이 총 330회, 3,126일간 출동하여 총 933건을 단속하였다.
2. 불법어업의 어업시기별 단속건수는 대체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

이 단속되었으나 1994년에 비하여 1995년, 1996년으로 갈수록 이 시기 이외의 다른 시기에도 많이 단속되는 등 그 단속건수가 연중 단속체제로 분산된 경향이였다.

3. 불법어업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단속된 해역은 충무항 근해의 남해 중부해역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36%를 차지하던 것이 1996년에는 약 51%로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여수항 근해의 남해 서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18%이던 것이 1995년에는 약 27%, 1996년에는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부산항 근해의 남해 동부해역으로서 1994년에 약 23%이던 것이 1995년에 약 18%, 1996년에 약 13%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4. 불법어업의 업종별 단속건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81%, 1995년에 약 82%, 1996년에 약 95%를 차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서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약 7%를 차지하고, 1996년에는 약 4%로 다소 감소하였고, 근해트롤은 1994년에 약 4%, 1995년에 약 2%, 1996년에 약 2%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5. 불법어업의 경영자 주소지별 단속건수는 부산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주소지로서 1994년에 전체 단속건수의 약 51%, 1995년에 약 41%, 1996년에 약 33%를 차지하는 등, 점점 감소하였고, 두 번째는 전남으로서 1994년에 약 24%,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약 29%로 담보상태이며, 세 번째는 경남으로서 1994년에 약 16%이던 것이 1995년에 약 20%, 1996년에 약 35%를 차지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6. 불법어업의 범칙 사항별 단속건수는 수산업법 제 57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이 가장 많으며, 전체 단속건수의 약 56~64%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어업으로서 전체 단속건수의 약 21~36%를 차지하였으며, 이상의 경우는 모두 그 단속건수가 증가하였다.

7. 신해양질서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 및 총어획허용량(TAC)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는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체계와 기능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며, 셋째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의 근절의지와 지도 계몽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려는 캠페인을 확산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8. 최근 3개년간 수산해양부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불법어업이 많은 시기, 해역, 업종, 경영자의 주소지, 범칙 사항별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에서도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V. 참고 문헌

국립수산진흥원(1997) : 연근해어업 기본조사 보고서, 전국총괄편, PP. 9~21, 56~156.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 김진건(1989) : 연근해어업의 현안문제, 한국어업기술학회지, 25(4), PP. 221~222.
- 박성패(1997) : 수산해양정책의 현실과 미래, 부경대학교 97 제3차 수산과학 심포지움, pp.17~33.
- 박연호(1983) : 한국 공무원 복지에 관한 분석적 고찰, 경희 행정논문집, 창간호.
- 박중성(1985) : 한국의 영해법, 법문사.
- (1971) : 연근해어업 진흥과 수산행정 체계의 개선 방안 및 부정어업에 관한 연구.
- 수산청(1992) :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 (1992) :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결과 보고서.
- (1995) :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 대책.
- (1996) : 96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
- (1995)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수산청 및 해양수산부(1978~1996) :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양세식(1987) : 한국수산법제, 제일문화사.
- 이태희(1996) :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단속에 관한 연구, 수산학 석사학위 논문.
- 최익성(1978) : 연근해어업의 문제점과 대책, 수산경영논집, 제9권 1호.
- 한국수산회(1984~1996) : 수산연감, 동양문화인쇄(주).
- 해양수산부(1997) : 97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 PP. 1~23.
- (1997) : 1997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PP. 77~80, 201~202.
- (1997) : 수산관계법령 해설서, 해양수산부 연근해과, PP. 2~35, 53~57, 63~71.
- (1997) : 해양 강국을 향한 첫 걸음, pp.102~103.
- (1997) : 해양수산 업무의 길잡이, pp.239~241.
- 農林統計協會(1994) : 漁業白書(平成5年度版), pp.186-187.
(平成6年度において沿岸漁業等について講じようとする施策), pp.14-15.

Actual Result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Sang-Jo LEE · Jin-Kun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lists of illegal fishing controlled by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rom 1994 to 1996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fishing patrol vessels controlled total 826 cases in 2,726 days of 292 voyages by 17 vessels in 1994, total 1,086 cases in 3,060 days of 333 voyages by 18 vessels in 1995 and total 933 cases in 3,126 days of 330 voyages by 19 vessels in 1996.

2. The fishing period of illegal fishing was generally concentrated from April to September. But year after year, illegal fishing was scattered throughout the year.

3. The most controlled sea area of illegal fishing was the south central sea area in the sea near Port of Tongyeong. The sea area occupied about 36~51% of totality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The second was the south western sea area in the sea near Port of Yosu. The sea area occupied about 18~27%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a little bit increased every year. The third was the south eastern sea area in the sea near Pusan. The sea area occupied about 13~23%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decreased year by year.

4. The most controlled kind of illegal fishing was the small size bottom trawl. This occupied about 81~95% of totality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increased year by year. The second was the medium size bottom trawl. This occupied about 4~7%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gradually decreased year by year. The third was the trawl of the coastal sea, this occupied about 2~4% and the controlled cases were a little bit decreased every year.

5. The most controlled address of illegal fishing manager was Pusan city which occupied about 33~51% of totality. The second was Cheonnam which occupied about 24~29%. The third was Kyungnam which occupied about 16~35%.

6. The most controlled violation of regulations was Article 57 of the Fisheries Act which occupied about 56~64% of totality. The second was Article 23 of Protectorate for Fisheries Resources which occupied about 21~36%. And the controlled cases by it were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